

# 순천대학교 정보윤리위원회규정

제정 2005. 4. 11.

개정 2007. 6. 26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의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정착시키고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순천대학교 전산자원에 게시된 게시물의 심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순천대학교정보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직무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인권 침해 여부, 타인 비방, 상업성, 미풍양속 저해 여부
2. 게시물의 내용 수정 권고 및 삭제 여부

**제3조(조직)**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순천대학교 정보화책임관인 기획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전산원장이 된다.(개정 2007. 6. 26)

③위원은 ②항의 당연직을 제외한 교원 5인(교수 이상), 직원 3인(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), 학생 3인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전반을 통할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회의)**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, 침해 당사자, 대학구성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투표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다.

③회의방식은 게시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원장이 정보통신망 이용회의 또는 일반회의로 결정한다.

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투표참여와, 투표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긴급삭제권)** ①위원장은 게시물의 내용이 제2조 1호에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때 긴급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심의 결과로 삭제를 지시할 수 있다

**제7조(관계 부서의 협조)** ①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는 관계 부서 교직원을 참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한 관계자의 출석,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 받은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평가과 직원중 위원장이 지명한다. (개정 2007. 6. 26.)

**제9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 (2005. 4. 1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7. 6. 2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